

나. 특별공급 대상자

- 신혼부부 :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인 혼인자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계약자는 임차인모집공고일[2023.12.15.(금)]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기준시점부터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자격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무주택자”란, 청약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임차인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봅니다.(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봅니다.)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봅니다.

■ 본 주택은 무주택세대에게 우선 계약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서, 특별공급 및 일반청약 당첨자 중 금회 공고에 따른 계약기간(예비당첨자 계약기간 포함) 내 계약한 자는 임차인 모집공고일(2023.12.15.(금))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하고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필요 시에 사업주체는 임차인 세대 구성원의 주택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임대기간 중에도 확인할 수 있음), 임차인이 무주택세대 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고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비고 3)을 준용하여, 임대차계약갱신 또는 재계약 체결 시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혼인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소득 요건의 경우 자격 요건상의 기준을 초과하여 증액된 경우는 제외하므로, 임대차계약 갱신 또는 재계약 체결시 임차인의 소득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소득 요건 기준을 30퍼센트포인트 초과하여 증액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갱신 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공급은 총세대수에서 특별공급을 제외하고 공급될 예정이며, 특별공급 접수 미달 시 발생하는 세대수는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향후 특별공급 예비임차인에게 공급하되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3개월 동안 계속하여 임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4조의 7에 따라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할 예정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후 남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 7규정 [임차인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 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중 빠른날까지 임대되지 않은 경우(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에도 최초 임차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에 따른 임차인 자격(무주택세대

요건) 및 선정방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의 임차인의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를 적용합니다.

- 이 주택의 견본주택 개관은 2023.12.15.(금) 10:00 부터이며, 공급안내문 등은 견본주택 및 힐스테이트 동탄포레 홈페이지(<https://hillstate.co.kr/SALE/999/main/index>)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 건전한 주택청약문화 정착을 위해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고 공동인증서(또는 네이버 인증서, 금융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신청은 청약홈(한국부동산원)에서 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방문하신 경우 청약신청 안내 및 도움을 드립니다.
- 전화상담 및 견본주택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임차인 모집공고문 및 관련법령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임차인 모집공고문 등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임차인선정 및 동·호수배정은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한국부동산원에서 전산추첨 및 동·호수 배정을 할 예정입니다.
- 이 주택은 임대무기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이 주택은 실임차인을 위한 것이므로 청약자, 계약자 및 임차인이 동일인이어야 하며, 향후 사업주체가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계약자와 실임차인이 다를 경우 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3.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장기민간임대주택에서 10년 후 매매를 약속하는 소위 매매예약을 하는 사례가 있어 임차인 피해가 우려된다' 는 지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이점 명확히 인지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매매예약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상 근거가 없고 임대보증금과 달리 우선변제권 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임대사업자가 매매예약을 한 임차인에게 계약 조건을 우대하는 등 매매예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따릅니다.

■ 임차권 양도 및 전대 금지

- 임차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전,후를 불문하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양도 및 전대한 경우 사업주체는 임차권을 박탈하고 기 납부한 보증금 중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위약벌이 공제되며, 입주 후 양도 및 전대한 경우 임차인의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해지로 인한 불이익(임대차계약에서 정해진 위약금징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주체가 양도 및 전대확인, 건물점검, 수리를 위해 전유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에 협조 하여야 합니다.

■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이 주택은 타입과 관계없이 세대당 1건 만 청약신청이 가능(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중복신청 불가)하며, 세대당 2건 이상 혹은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시 청약신청 및 당첨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본 주택은 재당첨제한 적용주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의 중복입주에 따른 퇴거요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는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2.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각 호의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3.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5.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가. 임차인의 자산 또는 소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및 제14조의7에 따른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 나. 임대차계약 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2)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여 세대가 분리된 경우
 -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2에 따라 임차인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7. 그 밖에 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민간임대주택의 부대시설·복리시설을 파손시킨 경우
3.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4. 임대사업자가 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그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임대주택의 명도 및 퇴거 의무 발생 기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 11)

-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는 경우
- 다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 임차인(임차인의 자격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을 포함하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 7에 따라 주택소유 기준 완화된 임차인은 제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 기타 관련법령 및 임대차계약서 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 주택 임대차 신고제(시행(21.06.01)으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대차계약 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화성시 2023-주택과-29888(2023.12.11.)로 임차인모집공고 신고
- 공급위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2택지개발지구 A-61BL(경기도 화성시 신동 561-1번지 일원)
- 공급규모 : 공동주택 지하 2층 ~ 지상 최고 20층 8개동 585세대(특별공급 118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공급대상 및 면적

(단위: m², 세대)

구분	주택관리번호	타입	세대별 계약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면적	공급세대수		계	입주예정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신혼부부	일반공급		
공공지원 민간임대	2023850032	84A	84.9733	23.1101	108.0834	50.9799	159.0633	-	48	48	2024년 05월
		84A-1	84.9733	23.1101	108.0834	50.9799	159.0633	70	-	70	
		84B	84.8229	22.6551	107.4780	50.8895	158.3675	-	32	32	
		84B-1	84.8229	22.6551	107.4780	50.8895	158.3675	48	-	48	
		101A	101.3623	26.9488	128.3111	60.8123	189.1234	-	198	198	
		101B	101.3132	26.4991	127.8123	60.7830	188.5953	-	189	189	
	합 계								118	467	585

- 본 주택은 인터넷 청약 시, 타입 기준 (84A,A-1/84B,B-1/101A/101B)으로 구분되어 청약접수가 진행되오니, 청약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에 적용되는 주택 타입 명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표기된 타입 명과 다를 수 있습니다.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주거 전용면적+주거 공용면적) 에서 주거 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의하여 청약 신청 바랍니다.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공용면적입니다. 또한 그 밖의 공용면적은 공급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으로, 상기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및 지하주차장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면적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단수조정으로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니 이점 명확히 인지 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차임을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동별·타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공부상 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 주거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단, 영유아 가정 어린이집 운영 목적에 한해 사업주체의 승인을 득한 경우 사용이 가능)
- [임차인 모집공고]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주택형별 타입 표기안내

공고상 전용면적(㎡)	84.9733		84.8229		101.3623	101.3132
공급유형	특별공급	일반공급	특별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일반공급
타입표기 방식	84A-1	84A	84B-1	84B	101A	101B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공급안내문 외 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별 전용면적이 동일한 타입이라도 특별공급(84A-1, 84B-1)과 일반공급(84A, 84B)으로 구분하였으며, 해당 타입은 건본주택 및 당사 홈페이지(<https://hillstate.co.kr/SALE/999/main/index>) 등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최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최대 10년이며, 그 임대차 계약기간의 만료일은 실제 입주일과 관계없이 최초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10년이 지난날 까지로 합니다. (또한, 선착순의 방법 등으로 입주지정기간 종료 이후 입주한 경우의 계약기간 만료일도 최초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10년이 지난날 까지로 합니다.)

■ 임대보증금 및 납부일정

(단위: 세대, 원)

공급 구분	타입	동별(라인별)	공급 세대수	층구분	임대보증금	계약금(10%)		중도금(5%)	잔금(85%)
						1차	2차	1회	
						계약시	2024.02.09	2024.03.15	
특별 공급	84A-1	4121동(1,4호)	70	1층 ~ 12층	388,025,000	10,000,000	28,802,500	19,401,250	329,821,250
		4122동(1,4호)							
특별 공급	84B-1	4124동(1,2호)	48	1층 ~ 12층	385,475,000	10,000,000	28,547,500	19,273,750	327,653,750
		4121동(2,3호)							
일반 공급	84A	4122동(1,4호)	48	13층 ~ 20층	433,675,000	10,000,000	33,367,500	21,683,750	368,623,750
		4121동(1,4호)							
일반 공급	84B	4122동(2,3호)	32	13층 ~ 20층	430,825,000	10,000,000	33,082,500	21,541,250	366,201,250
		4121동(2,3호)							
일반 공급	101A	4123동(1,4호)	198	1층 ~ 20층	519,175,000	10,000,000	41,917,500	25,958,750	441,298,750
		4125동(1,4호)							
일반 공급	101B	4126동(1,4호)	189	2층 ~ 20층	517,275,000	10,000,000	41,727,500	25,863,750	439,683,750
		4127동(1,4호)							
		4128동(1,4호)							
		4123동(2,3호)							
		4125동(2,3호)							
		4126동(2,3호)							
		4127동(2,3호)							
		4128동(2,3호)							

■ 상기 임대조건의 계약금은 공급유형 및 선택 주택형에 따른 총 임대보증금의 10%이며,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 전 납부일정에 따라 총 임대보증금과 계약금의 차액을 납부바랍니다.

■ 임차인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정된 날짜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10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보증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2년 단위로 5% 범위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증액 가능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명시 됩니다.)

■ 상기 주택형별 임대조건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시행자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므로 청약자 및 당첨자는 이점 명확히 인지 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계약 시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지정기간에 입주한 임차인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입주 후 최초 임대차계약으로부터 10년까지 유효합니다.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임대조건은 주택형별 차등이 있으므로 동·호별 임대조건은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조건에는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됩니다.
-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미납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액과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체료,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배상금, 대출금에 대한 잔액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 등 선순위 자에게 반환할 채권 등을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합니다.
- 위약별 산정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주 전 임대보증금 위약별 : 총 임대보증금 X 국민은행 목돈굴리기 1년만기 정기예금 상품들 중 최고 금리와 최저 금리의 평균값 X 10년(계약기간 전체) X 10%
 - 입주 후 임대보증금 위약별 : 총 임대보증금 X 국민은행 목돈굴리기 1년만기 정기예금 상품들 중 최고 금리와 최저 금리의 평균값 X 임대차 계약기간 잔여일수 X 10% (입주 시 합의서 작성 예정)
- * 입주 전 추가선택품목 위약별
 - 총 공급금액 X 10%, 단 사업주체가 공사에 착수하거나 별도 품목 상품을 제작업체에 주문 또는 발주한 이후 별도 품목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을”은 위약별(총 공급금액의 10%)과는 별도로 원상회복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함
- * 입주 후 추가선택품목 위약별
 - 입주 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차인은 선택한 추가선택품목은 회수하여야 한다.(단, 임차인은 추가선택품목 설치 전 형태로 원상복구하여야 함) 임차인은 사업주체에 추가선택품목 납부금액 환불을 요구하거나, 추가선택품목을 재매입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3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공통)

- 청약신청은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청약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세대당 1건(세대주 혹은 세대원 중 1인)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당 2건 이상 혹은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시 청약신청 및 당첨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계약자 1명을 정하여 예비신혼부부 두 명이 함께 1주택을 신청하여야 함)의 경우에는 세대주, 세대원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차인 모집공고일[2023.12.15.(금)] 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일반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이면서,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은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 이 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일반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에게 공급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무주택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며, 추후 무주택 여부 검증 시 무주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필요 시 준공 전 및 임대기간 중에도 임차인의 주택소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 특별공급 청약은 반드시 해당 타입(84A-1, 84B-1)으로 청약을 신청하여야 하오니 청약전 반드시 타입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모집분야	자격요건	선정방법
비주택(아파트) 신혼부부	<p>임차인 모집공고일[2023.12.15.(금)]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혼인 중인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 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이면서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p> <p>가. 혼인: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나. 소득: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인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신혼부부) 유형별 공급세대수에 한하여 배정하며,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 전부를 대상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요건 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 - 1순위 :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 2순위 :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10%이하 - 3순위 :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 <p>· 예비임차인 선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공급세대수의 청약 신청이 미달 될 때 청약 신청자 모두를 당첨자로 하며, 청약신청자가 해당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900%이내의 범위에서 예비임차인을 선정하며, 공급물량의 900%를 초과할 경우 예비임차인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p>

■ 특별공급(신혼부부) 소득 기준 산정

(단위: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100%이하	3,353,884	5,005,376	6,718,198	7,622,056	8,040,492	8,701,639	9,362,786	10,023,933
110%이하	3,689,272	5,505,914	7,390,018	8,384,262	8,844,541	9,571,803	10,299,065	11,026,326
120%이하	4,024,661	6,006,451	8,061,838	9,146,467	9,648,590	10,441,967	11,235,343	12,028,720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61,147)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임차인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의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및 예비임차인 선정 방법**

-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청약신청, 임차인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한국부동산원의 전산추첨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임차인을 선정하고 남은 주택(특별공급 예비임차인 미계약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아니하며 특별공급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향후 임차인모집 재공고를 통해 공개추첨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재공고 여부는 추후 결정됨)
- 입주개시일 이후 신혼부부 공급분에 대한 잔여물량은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임차인에게 공급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입주개시일까지 임차인 자격요건의 완화가 되지 아니하며 입주개시일 이후 시,군,구청장과 협의에 따라 임차인 자격요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임차인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에 따라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900%까지 예비임차인을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임차인 명단은 당첨자 발표 후 홈페이지(<https://hillstate.co.kr/SALE/999/main/index>)에도 별도 공고합니다.

■ **일반공급 신청자격**

■ **일반공급 모집안내**

모집분야	자격요건
일반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차인 모집공고일[2023.12.15.(금)]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무주택세대구성원(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의2 규정에 따른 세대주인 미성년자 포함 · 본 주택은 세대 당 1건에 한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중복신청 불가) ·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청약신청은 가능하나 세대당 2건 또는 1인 2건 이상 중복청약 시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하며 부적격처리될 수 있으므로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장 가입여부, 소득 및 자산보유액,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계약자는 임차인 모집공고일 [2023.12.15.(금)]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기준시점부터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무주택세대 구성원 조건 미 충족시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및 예비임차인 선정 방법**

구분	내용
당첨자 선정 방법	· 한국부동산원 임차인 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추첨의 방식으로 당첨자(예비임차인)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을 실시합니다.
예비임차인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차인 선정 시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900%까지 예비임차인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 예비임차인 명단은 당첨자 발표 후 홈페이지(https://hillstate.co.kr/SALE/999/main/index)에도 별도 공고합니다. · 일반공급 대상 주택의 임차인을 선정하고 남은 주택(예비당첨자 미계약 주택)이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대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 등으로 공급할 예정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금(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구분	청약신청금	신청금 납부방법
특별공급 / 일반공급	100만원	· 주택청약 참가은행(15개)에 입출금통장 개설 후 청약신청금 100만원 이상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청약 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

※ 주택청약 참가은행 : 기업, 국민, KEB하나, 신한,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은행

■ 무주택 판정기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4조의9 제4항)

<p>주택소유 여부 판정시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예비신혼부부는 주택공급 신청자와 그 세대 구성 예정자까지 포함, 청년은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 주택의 범위 :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 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 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 제4호 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 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 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 밖에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임대사업자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등록 기준지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임대사업자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주택법」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 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 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 되고 있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건물 [총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 하여야 한다. 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임차인을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 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 청약접수일정 및 당첨자 발표

구 분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청약신청금	당첨자발표
특별공급 (신혼부부)	2023.12.27(수) (09:00 ~ 17:30)	인터넷 청약접수 청약Home(한국부동산원) (www.applyhome.c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정보취약계층은 분양사무소에서 인터넷접수를 도와드립니다. 	1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24.01.02(화) 16:00 -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일반공급					

■ 청약신청은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청약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착오방지를 위하여 개별서면통지 및 유선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명단은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동인증서(또는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예비 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 후 당사 홈페이지(https://hillstate.co.kr/SALE/999/main/index)에도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인터넷청약 서비스 안내(청약신청일 09: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이용안내	· 거래은행 인터넷뱅킹가입(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하신 분으로 거래은행 출금계좌에 청약신청금 이상의 출금 가능한 잔액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 ※단, 인터넷뱅킹 1일 및 1회 이체한도가 청약신청금(100만원) 이상이어야 함
이용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청약시] ① 접속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청약신청 ⇒ 「공공지원민간임대 선택」 ⇒ 청약신청하기 ② 청약 : 인증서 로그인 ⇒ 주택선택 ⇒ 유의사항확인 ⇒ 특별공급/일반공급 선택 ⇒ 청약자격확인 ⇒ 선정기준 입력/확인 ⇒ 연락처 등 입력 ⇒ 청약신청내역 확인 및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입력 ⇒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청약접수완료 ⇒ 신청내역조회 ·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접속 후 PC청약방법 참조

※ 스마트폰앱: ‘청약Home’ 검색

- 청약은 PC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스마트폰 ‘청약홈’ 검색을 통해 청약가능하며, 청약 전에 전국 시중 은행(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서 인터넷뱅킹에 가입하고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청약신청은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청약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세대당 1건(세대주 혹은 세대원 중 1인)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당 2건 이상 혹은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시 청약신청 및 당첨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계약자 1명을 정하여 예비신혼부부 두 명이 함께 1주택만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이 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무주택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며, 추후 무주택 여부 검증 시 무주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필요 시 준공 전 또는 임대기간 중에도 임차인의 주택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 청약홈 인터넷 청약 접수 시간 17시 30분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시 30분이 경과하면 청약 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는 신청당일 17시 30분 이전에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한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청약신청 전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고 공동인증서(또는 네이버 인증서, 금융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청약하고자 하는 거래은행에 청약신청금을 미리 예치하여야 합니다.
- 본 임차인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이 불가(노약자, 장애인 등)할 경우, 견본주택 방문 청약시 유의사항

- 청약 신청자 중 인터넷 청약이 불가(노약자, 장애인 등)할 경우, 견본주택 방문 시 청약홈(한국부동산원) 인터넷 청약접수를 도와드릴 예정이오니, 아래 일정 및 장소, 구비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정 및 장소

구분	청약신청	신청장소	비고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청약불가자 견본주택 방문 청약	2023.12.27(수) 10:00 ~ 17:30	당사 견본주택 :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967-1810	노약자, 장애인등 인터넷청약불가자에 한해 견본주택 방문 접수 가능

■ 구비사항

구분	구비사항	
본인신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건본주택 비치) / 본인, 배우자 서명가능 · 특별공급, 일반공급 건본주택 방문 청약 시 청약신청금 필요(주택청약 참가은행에 통장개설 및 청약신청금 예치), 공동인증서(또는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발급 후 인증서를 지참하여 건본주택 방문 ※ 건본주택에서는 현금수납 불가하므로 필히 주택청약 참가은행 입출금 통장에 청약신청금(100만원) 이상이 예치돼 있어야 하며, 인증서를 필히 발급하여 지참하시기 바랍니다.(단,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할 경우에 한함)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단, 재외동포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가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임차인모집공고일(2023.12.15.) 이후 1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합니다.(단, 주민등록상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타입 착오기재, 모집공고상 기준과 상이한 다수 청약 등으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사업주체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청약 신청시 건본주택에서는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청약홈 신청사항 혹은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만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전 본인의 청약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일정 및 장소

구분	당첨자 발표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당첨자 및 예비순번 발표
특별공급 / 일반공급	2024.01.02.(화) 16:0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착오방지를 위하여 개별서면 통지 및 유선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예비 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 후 당사 홈페이지(https://hillstate.co.kr/SALE/999/main/index)에도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 청약신청은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청약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청약신청금 환불방법

구분	환불장소
환불대상	·인터넷 청약자 전원(당첨자 및 낙첨자 전원)
환불시기	·당첨자 발표일 익영업일(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인터넷청약자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환불

※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5 계약체결 및 구비서류

■ 구비서류 제출, 계약일정 및 장소

구분	서류접수 및 계약일정	계약체결 장소
구비서류 제출	2024.01.04(목) 10:00 ~ 2024.01.09.(화) 10:00 ~ 17:00	당사 건본주택 :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967-1810
당첨자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공급)	2024.01.10(수) 10:00 ~ 2024.01.12.(금) 10:00 ~ 17:00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등에 관한 사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9]

■ 당첨자 계약체결 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가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세대 발생 시 예비임차인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체결 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9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 임차인 선정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관련 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임차인 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 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본 주택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재당첨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부적격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를 별도로 하지 않으나 소명기간 내 소명이 되지 않을 시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당첨에 따라 기존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하고 있으면 본 주택 입주 가능 시점부터 해당 주택의 입주 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임차인 자격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임차인 자격 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 요건의 경우 그 기준을 30%p 초과하여 증액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 혼인 및 소득 요건

■ 본 모집공고상 사업주체인 (주)화성동탄피에프비이는 법인세법 제51조의 2에 의해 설립된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로서 주택법 제5조에 의해 토지소유자인 (주)화성동탄피에프비이와 등록사업자인 (주)에이치엠지힐스, (주)한강주택관리가 공동사업주체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완료하였으며, 계약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을 (주)화성동탄피에프비이와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및 필요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공통서류			○		1.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사전 제출서류 계약 시 대체)	
			○		2.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아파트 임대계약용(본인 발급용)	
			○		4.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생략 가능	
			○		5.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6. 주민등록표 등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포함하여 발급	
				○	7.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8.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9. 추가 개별통지 서류	• 사업 주체에서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특별 공급 유형	신혼 부부	혼인 상태인 경우	○		1.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신고일 확인서, "상세"로 발급	
			○		2. 소득 확인 서류	•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소득 관련 서류 발급	
		혼인 예정인 경우	○		1. 결혼 확인 서류	• 서약서(견본주택 비치), 입주전까지 혼인사실 증명(가족관계증명서)필요(미제출 시 공급계약 취소)	
			○		2.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 혼인 예정 배우자 기준 "상세"발급	
	공동 (해당자)			○		3. 소득 관련 서류	• 혼인 후 구성될 만 19세 이상 세대 구성원 모두 소득관련서류 발급
					○	1. 임신증명서류	• 소득 관련 가구원 수 포함일 경우 발급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 임차인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출산이행각서(견본주택 비치)
					○	2.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발급
				○	3. 비사업자 확인 각서	• 견본주택 비치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1.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용)_청약자 기준	
			○		2. 위임장	• 견본주택비치, 청약자 인감도장 날인	
			○		3. 대리인 신분증, 인장	• 재외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	

■ 상기 모든 증명서류(계약 시 구비서류)는 임차인모집공고일(2023.12.15.) 이후 1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된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민등록번호(13자리 모두)' 등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방문시 청약 당첨자 외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된 증명서류에 대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신혼부부)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이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금년도 월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년도 동일직장, 동일직급, 동일호봉인 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거나, 해당 직장의 연봉/근로계약서(직인날인)를 제출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세무서
	전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전년도 전직(이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자격취득 일자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산정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세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 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서표(근로소득지급조서(명세서))(직인날인)	① 해당 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사업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③ 소득금액증명 발급 불가 시 - 국민연금 가입자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모집공고일 이전 가입한 경우만 인정) - 국민연금 미가입자 : 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모집공고일 이전 신고분만 인정) (신고서상 금액(매출액-매입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①, ② 세무서 ③ 국민연금관리공단/세무서
	법인대표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③ 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①, ②, ③ 세무서
	신규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국민연금 가입자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모집공고일 이전 가입한 경우만 인정) ③ 국민연금 미가입자 : 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모집공고일 이전 신고분만 인정) ④ 신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이전인 경우 : 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모집공고일 이전 신고분만 인정) (신고서상 금액(매출액-매입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① 세무서 또는 등기소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③, ④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원본, 직인날인)	① 해당 직장/세무서 ② 해당 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① 주민센터	
일용근로소득자	①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① 세무서/해당 직장	
무직자 (만19세이상)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입차인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이 아닌 경우) ②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① 견본주택 비치 ② 세무서	

※ 상기 소득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군 복무 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 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 복무자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된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 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임대보증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

구 분	금융기관명	납부 계좌	예금주	비고
계약금	경남은행	207-0133-0431-00	(주)무궁화신탁	
2차계약금, 중도금, 잔금	경남은행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계약자 동·호수(예 : 4121-1001)	

■ 무통장입금 시 동, 호수,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101-902홍길동)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납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당사 견본주택에서는 대금을 수납하지 않으니 반드시 해당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2차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경남은행, 207-0133-0431-00)로 관리됩니다.

- 세대별 2차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시, 세대별 표준임대차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 지정된 2차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납부지정일자에 입금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지정계약체결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시에는 당첨효력이 상실됩니다.

■ 무통장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은 계약체결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은 계약금 납부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은 계약 체결 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 지정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 납부일(입주일) 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잔금 및 일체의 납부금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 잔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체이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 가중평균 여신금리와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 은행이 정한 가산금리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라도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확장 및 유의사항

- ※ 본 임대주택은 공정률 80% 이후에 분양하는 후분양 공공지원민간임대아파트로 전 타임 및 세대 모두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고, 기본형 선택이 불가합니다.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공급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이점 명확히 인지 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 당해 공동주택은 침실1 전면부 및 다용도실을 제외한 전체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발코니 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하여 요청할 수 없습니다. 이점 명확히 인지 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습니다.
- ※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니 이점 명확히 인지 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 사항은 홍보자료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샷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본 공사 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내부 형상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 하여야 합니다.
-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동일평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세대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 및 추가선택품목 관련 유의사항

- ※ 본 임대주택은 공정률80% 이후에 분양하는 후분양 공공지원민간임대 아파트로 모든 세대가 일괄 동일 조건으로 시공중인 상황이나 임차인의 선택권을 부여하고자 시스템에어컨 등 추가선택품목을 미선택하는 임차인의 경우 준공 이후 사업주체가 주관하여 철거 및 재시공을 진행 하고자 합니다.
- ※ 추가선택품목을 미선택하는 임차인의 경우 시공사와 별개로 사업주체가 주관하여 공고상 기재된 추가선택품목에 한하여 준공 이후 미선택품목을 철거 후 제공할 예정입니다.
- ※ 추가선택품목 미선택시 발생하는 철거비용과 재시공 비용은 사업주체가 부담하며, 공고상 임차인 사전방문(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전)및 입주지정 기간(2024년 5월 예정)과 별개로 재시공 후 임차인의 재시공 품목 검증을 위한 임차인 추가점검을 통하여 미선택항목 확인과정 기간 제공 예정입니다.
- ※ 추가선택품목 미선택임차인의 임차인 추가점검 확인 과정과 입주지정기간 일정은 개별 공지 예정입니다.
- ※ 추가선택품목 미선택하여 철거 후 재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의 경우 사업주체의 책임에 따라 하자보수가 처리 될 예정입니다.
(단, 입주 이후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합니다.)

■ 선택품목 계약

1) 시스템 에어컨

(단위: 원, VAT포함)

주택형	선택	적용실(개소)	제조사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5%)	잔금(85%)
84A(84A-1) 84B(84B-1)	ALT1	거실, 주방, 침실1(3개소)	삼성전자	6,675,000	667,500	333,750	5,673,750
	ALT2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4개소)		7,120,000	712,000	356,000	6,052,000
	ALT3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침실4(6개소)		8,900,000	890,000	445,000	7,565,000
101A 101B	ALT1	거실, 주방, 침실1(3개소)		6,975,000	697,500	348,750	5,928,750
	ALT2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4개소)		7,440,000	744,000	372,000	6,324,000
	ALT3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침실4(6개소)		9,300,000	930,000	465,000	7,905,000

※ 시스템 에어컨 관련 유의사항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및 추가선택품목을 미선택 할 경우 준공 이후 사업주체가 주관하여 철거 후 제공예정이며 시공사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사항이오니 이점 반드시 확인하시어 청약 및 계약진행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 미선택으로 철거하여 제공할 경우 거실과 침실1의 일반에어컨용 개별 냉매매립배관과 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선시공 후분양 아파트의 특성상 시스템 에어컨 미선택시 설치된 시스템에어컨은 철거될 예정이며, 이는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미선택 세대의 경우 입주예정일(2024.05월) 이후로 입주지정일이 별도지정될 예정이며 미선택 세대의 자세한 입주일정 및 내용은 견본주택 방문 시 안내 예정입니다.
- 임차인은 퇴거시 설치된 시스템에어컨을 철거 및 원상복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임차인 본인이 부담합니다.
- 철거 없이 퇴거를 원할 경우 사업주체 측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미철거 된 시스템에어컨에 대한 보상금액 또는 환불금액은 별도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에 관한 상세내용 중 공고문에 기재하지 못한 내용은 추후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계약 시 별도의 안내 후 계약 진행합니다.
- 선시공 후분양 아파트의 특성상 공정상의 사유로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계약기간 동안 계약이 가능하며, 계약기간 이후에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제조사와 모델은 설치시점에 이르러 생산 단종 (제품의 품질, 품귀, 성능개선, 디자인 개선 등의 사유)발생시 동제조사의 동급 수준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으며, 제조사의 폐업, 부도, 천재지변등의 사유로 제품공급이 불가시 동급 이상의 타제조사 제품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의 발생시 공고한 바에 따라 적용되며 별도의 동의서는 징구하지 않습니다.)
- 추가설치품목(유상)중 완제품으로 시공된 전자제품의 서비스내용 및 제품에 대한 하자는 아파트 하자담보 책임범위에서 제외되며, 서비스내용에 대한 민원, 제품에 대한 하자 발생 시 제조사 보증책임에 따라 처리됩니다.
- 추가설치품목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위약금 등에 대한 상세내용은 추가설치품목 계약서에 기재하고 체결하오니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준공 후 3년간 하자 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입주자의 관리부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하자는 제외)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구성 및 설치위치는 주택형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 등의 사유로 거실과 침실1의 일반에어컨용 개별 냉매매립배관과 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해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등기구 위치 등 시공여건에 따라 실내기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용량에 맞는 제품으로 실외기 공간에 설치되며, 운전소음이 발생함에 따라 인접한 실내로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리모콘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시운전을 위해 보양지가 제거되며, 입주 시 보양지가 제거된 상태로 공급되게 됩니다.

2) 추가선택품목 - 가구옵션

(단위: 원, VAT포함)

구분	품목	주택형	내용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5%)	잔금(85%)
현관	현관팬트리	84A(84A-1), 84B(84B-1)	시스템가구 + 도어가구	1,560,000	156,000	78,000	1,326,000
		101A, 101B		1,790,000	179,000	89,500	1,521,500
	신발장	84A(84A-1), 84B(84B-1)	-	1,150,000	115,000	57,500	977,500
		101A, 101B		1,300,000	130,000	65,000	1,105,000
주방	주방상판/벽, 주방상부장 마감, 주방거치대	84A(84A-1)	주방상판/벽 세라믹타일(수입, 이태리산) 주방상부장 유리도어 주방거치대(주방상부장 부착)	5,200,000	520,000	260,000	4,420,000
		84B(84B-1)		7,000,000	700,000	350,000	5,950,000
		101A, 101B		7,700,000	770,000	385,000	6,545,000
	아일랜드식탁	84A(84A-1)	-	2,000,000	200,000	100,000	1,700,000
	주방팬트리	84A(84A-1), 84B(84B-1)	시스템가구 + 도어가구	1,440,000	144,000	72,000	1,224,000
		101A,101B		1,680,000	168,000	84,000	1,428,000
	주방발코니 선반	전 주택형	-	200,000	20,000	10,000	170,000
	냉장고장	전 주택형	-	1,210,000	121,000	60,500	1,028,500
거실, 복도	아트월(거실)	84A(84A-1), 84B(84B-1)	포세린타일(무광)	1,804,000	180,400	90,200	1,533,400
	아트월(거실, 복도)	101A,101B	라파토타일(반광)	4,020,000	402,000	201,000	3,417,000
	거실 우물천장	84A(84A-1), 84B(84B-1)	-	2,000,000	200,000	100,000	1,700,000
		101A,101B		2,200,000	220,000	110,000	1,870,000
드레스룸 (침실1)	드레스룸 시스템가구, 화장대, 드레스룸 3연동 슬라이딩 도어	84A(84A-1), 84B(84B-1)	-	4,940,000	494,000	247,000	4,199,000
		101A,101B		5,340,000	534,000	267,000	4,539,000
침실2	반침장	전 주택형	-	1,580,000	158,000	79,000	1,343,000
침실1 발코니	전동 빨래건조대	전 주택형	-	200,000	20,000	10,000	170,000
전실	광폭 강마루	84A(84A-1), 84B(84B-1)	-	2,300,000	230,000	115,000	1,955,000
		101A,101B		2,600,000	260,000	130,000	2,210,000

3) 추가선택품목 - 가전옵션

(단위: 원, VAT포함)

구분	품목	주택형	선택	내용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5%)	잔금(85%)
주방가전	냉장고	84A(84A-1), 84B(84B-1)	ALT1	비스포크 4도어 냉장고 + 비스포크 4도어 김치냉장고 (코타차콜+코타화이트)	6,550,000	655,000	327,500	5,567,500
			ALT2	비스포크 4도어 냉장고 + 비스포크 3도어 김치냉장고 (코타차콜+코타화이트)	6,450,000	645,000	322,500	5,482,500
		101A, 101B	ALT1	비스포크 4도어 냉장고 + 비스포크 4도어 김치냉장고 (새틴베이지)	6,750,000	675,000	337,500	5,737,500
			ALT2	비스포크 4도어 냉장고 + 비스포크 3도어 김치냉장고 (새틴베이지)	6,650,000	665,000	332,500	5,652,500
	인덕션	전 주택형	하이브리드 (인덕션2구, 하이라이트1구)		460,000	46,000	23,000	391,000
	오븐	전 주택형	삼성 전기오븐		400,000	40,000	20,000	340,000
욕실가전	비데(분리형)	84A(84A-1), 84B(84B-1)	욕실1(부부욕실) 1개소		200,000	20,000	10,000	170,000
	비데(일체형)	101A, 101B	욕실1(부부욕실) 1개소		800,000	80,000	40,000	680,000
	수전 업그레이드	전 주택형	세면기, 욕조, 샤워부스, 주방		390,000	39,000	19,500	331,500

■ 가구류 및 가전제품 유의사항

- 추가선택품목 가구옵션 및 가전옵션은 일괄선택 또는 개별선택이 가능하며, 계약 후 변경이 불가 합니다.
- 선시공 후분양 아파트의 특성상 시스템 추가선택품목(가구옵션+가전옵션) 미선택시 설치된 추가선택품목(가구옵션+가전옵션)은 철거될 예정이며, 이는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미선택 세대의 경우 입주예정일(2024.05) 이후로 입주지정일이 별도지정될 예정이며 미선택 세대의 자세한 입주일정 및 내용은 견본주택 방문 시 안내 예정입니다.
- 추가선택사항 유선품목 유/무상 적용 및 구매 금액은 당사의 마케팅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견본주택 오픈시, 관련 홍보책자 등을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옵션품목 계약은 임대주택 임대차계약과 별개이며, 옵션품목 설치를 원할 경우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추가옵션품목 공급가는 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임대보증금액과 별개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계약자가 계약한 유상옵션 품목 중 냉장고 등 탈착이 가능한 가전제품의 경우 계약자가 해당 품목을 구입한 것으로 보아 계약자는 위 주택의 임대차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퇴거 시 해당 품목을 탈거하여야 하고, 사업주체는 해당 품목에 해당하는 옵션 금액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와 계약자간 체결한 임대차계약 및 별도품목계약의 내용을 따릅니다.
- 추가설치품목의 무상서비스기간 이후부터 발생하는 보수는 임차인의 비용으로 하기로 합니다.
- 추가설치품목의 무상서비스기간은 제조사별로 상이 하오니, 제조사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 안내

계좌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선택품목 납부 계좌(계약금)	경남은행	207-0133-0417-00	(주)무궁화신탁
중도금 및 잔금 납부계좌	계약체결시 세대별 개별계좌 부여(가상계좌)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은 공동주택 임대차계약과 별개이며 아파트 계약일에 선택과 계약을 진행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판매가는 공동주택 임대보증금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경남은행, 207-0133-0417-00)로 관리됩니다.
 - 세대별 추가선택품목 중도금 및 잔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시, 세대별 추가선택품목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 지정된 추가선택품목(중도금, 잔금)은 납부지정일자에 입금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임대보증금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비용은 상기 납부계좌로 반드시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건본주택 현금수납 불가) 하시기 바라며, 입금 시 계약할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 : 101동101호 홍길동 → “1010101홍길동”)
- 추가선택품목 비용을 납부한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확인서 등은 계약체결시 지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아파트(공동주택)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추가 선택품목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납부금액 및 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주택형별로 산출된 가격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사항은 건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유의사항

■ 임차인 사전점검

-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입주자 사전점검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점검 예정기간은 별도 고지할 예정입니다.
- 임차인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 2024년 5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통보)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입주가 가능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전쟁, 내란,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 파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연보상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세대 내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며, 이후 발생하는 일반관리비 및 세대관리비 (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함)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임대보증금 보호 관련 사항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일정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의거 임대보증금보증의 대상이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 등)에 의거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우선 가입하고, “임차인”은 보증수수료의 100분의 25를 “임대인”이 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을 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 대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실내골프장, 휘트니스, GX룸 등) 및 북카페, 스테디룸, 독서실, 관리사무실 등 주민공동시설

■ 중도금 대출 사항

- ※ 중도금 대출을 알선하지 않으며, 중도금(5%)은 상기 납부일정(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 가산됨)에 맞추어 자력으로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는 개인신용대출 등의 대출상담을 하지 않으며 전화상담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개인신용대출 불가 등의 책임을 요구 할 수 없습니다.
- ※ 임대계약자는 중도금 대출 미진행에 따른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임대보증금 보증안내(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임대보증금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 임대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사용검사전 임대보증금 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1212023-704-0010000호	₩42,124,346,250원	보증서 발급일부터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승인(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을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 다만,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를 위해 보증서가 발급된 세대의 보증기간 시작일은 민간임대주택공급신고증명서 발급일부터로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주요내용

제1조(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와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임대보증금계약 포함, 이하 같음)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1. 보증서에 적힌 세대별 보증금액 한도에서 보증채권자가 보증서 발급일(공급신고대상 임대주택사업의 경우에는 공급신고증명서 발급일, 이하 같음) 이후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22조에 따라 공급촉진지구에서 민간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공사의 이행방법 결정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주거나 해당 주택의 임대이행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이 보증서에 적힌 주채무자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주채무자와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 임대주택이나 같은 법 제18조 제6항에 따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 임대주택 또는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함)에 대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 이전에 그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공급신대상 임대주택사업】 민간임대주택법 제42조 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공급 신고증명서】 공급신대상 임대주택사업에서 임대사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를 하고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4조의12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증명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공급촉진지구】 민간임대주택법 제22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정 및 고시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임대이행】 보증사고시 해당 주택의 임대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하여 임대보증금을 책임지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 임대보증금 등의 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차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는 공사의 보증이행 대상이 아닙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보증서 발급일 이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임대보증금
3.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후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4.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미리 납부한 임대보증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이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다만, 공사가 임대보증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임대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된 임대보증금은 제외합니다.
5. 보증서 발급 이전 또는 보증사고 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의 해제, 해지 등 종료로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임대보증금. 다만,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주택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6. 주채무자가 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임대보증금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위약금, 그 밖의 손해배상채무
7.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임대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임대보증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지연배상금,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비용·그 밖의 종속채무
8.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 실제 거주하지 않는 명목상 임차인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9. 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한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보증채권자가 책임질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한 채무
10. 보증채권자가 보증서 발급일 이후 납부한 임대보증금으로서 보증서에 적힌 임대보증금 납부계좌(임대보증금 납부계좌를 변경하여 알린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임대보증금
11.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임대보증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 통보계좌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12.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겨 납부한 임대보증금
13.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 선택 품목(예시 : 홀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4.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 제공,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 및 상기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계약금을 빌려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사유로 납부한 임대보증금
 15. 주채무자가 책임질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하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6. 그 밖에 보증채권자가 책임질 사유 또는 권리행사를 게을리하여 주채무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나 그로 인하여 생긴 손해
- ② 공사가 제1조 제2호에 따라 임대이행을 할 경우 보증채권자는 잔여 임대보증금 및 제1항 제4호, 제10호 부터 제12호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중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이너스옵션 부위】 마감재 공사등을 수분양자가 시공하는 조건으로 분양가를 사전에 할인받고 수분양자가 자기 책임하에 시공한 공사부위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3조(보증채권자의 협력의무 등)

- ① 보증채권자는 공사의 사전동의 없이 주채무자 등으로부터 저당권 설정 등의 요청에 동의하지 않아야 합니다.
- ②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공사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조사의 협조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채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 ③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일 이후부터 임대보증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 ④ 보증채권자는 주채무자의 부도 등의 사실을 통지받거나 알게 된 경우에는 공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 ⑤ 보증채권자는 공사가 선정한 승계사업자 또는 시공사의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 ⑥ 보증채권자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공사는 그로 인해 입은 손해의 배상을 보증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약·당첨·입주·관리 등

- 이 주택의 사업주체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거한 부동산투자회사로서 계약은 (주)화성동탄피에프비와 체결하게 됩니다.
- 이 공동주택은 실입차인을 위하여 건립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부정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주택법」제101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5조에 의거하여 처벌 받게 됩니다.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취지를 고려하여 임대사업자가 계약자의 거주 지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 임대주택 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사업자의 자료제출 및 조사요구에 협조해야 합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임차인이 청약신청시 알아야 할 사항은 건본주택 및 당사 홈페이지(<https://hillstate.co.kr/SALE/999/main/index>) 등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화상담, 건본주택 방문고객 상담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상담내용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고, 정확한 내용은 임차인모집공고 및 관련법령 등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차인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계약조건 및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건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는 사이버모델하우스, 평면도, 배치도 등 확인하고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임대사업자, 임대관리회사,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각종 통지 등은 임대사업자가 위탁한 주택임대관리업체에서 대행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이후 주소, 연락처, E-mail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등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통지 불이행으로 인하여 각종 통지서 등이 미도달하여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니 이점 명확히 인지 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시 임대보증금의 잔금납부, 이사짐의 도착, 임차인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입주 잔금 등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잔금납부 및 입주 전 임대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보증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퇴거시 원상복구 완료여부 등에 대하여 권한있는 제3자에 의한 검증이 필요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의 일부(임대보증금의 10% 범위 내에서 유보금으로 우선공제 할 수 있고, 원상복구비용(임차인 과실분), 퇴실 후 세대청소 및 사용료 등 정산 후 1개월 내에 반환됩니다.
- 기타 임차인모집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및 시설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따릅니다. 임차인모집공고 내용과 주택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 임차인은 임대주택의 구조 및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최초 입주시 작성한 시설물 인수인계서에 기재된 내용물의 망실, 손괴 등에 대하여 임차인의 비용으로 동등 수준의 제품으로 교환 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기타 임차인(동거인 포함)의 원상복구 범위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따릅니다.
- 현재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임대의무기간(10년)경과 후 본 공동주택의 매각 또는 임대기간 연장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인허가 및 실시공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동출입구, 창틀모양 및 색채, 옹벽, 조경석, 난간의 디테일, 축벽문양, 입면, 환기용캡 등)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 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009년 4월 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임차인이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외부의 건물 신축, 단지 외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 단지 내 건축물의 배치 등으로 동별·층별·호수별로 일조권·조망권·생활권·환경권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휴게공간과 어린이 놀이터, 관리동 및 주민공동시설 등의 설치로 소음발생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전에 사업부지 및 건본주택 내방을 통해 이를 필히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경우 외부인 이용가능시설(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어 외부인에 대한 임시주차가 일부 허용되며 이점 명확히 인지 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형 및 각종 인쇄물 등에 표현된 조감도, 조경배치도, 시설물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모형제작 및 그래픽 표현의 한계 등으로 인해 실제와 다를 수 있으나,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시공 시 구조 등의 안정성 및 입주민의 이용효율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영향평가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 이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명확히

인지 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 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 등)는 임대사업자, 시공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 지역의 타 시공사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추후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입주지정기간 이후 일반관리비 및 세대관리비(전기, 수도, 가스, 난방 등 포함)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 및 관리비에치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 전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일부를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청약자, 계약자, 입주자가 동일인이어야 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처벌받게 됩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지불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체이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가계자금 대출이자율과 연체가산율을 합산한 이율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이 주택 청약신청 시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해당 주소는 필수입력항목이므로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당사에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계약시 입주자에게 별도의 용자지원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본 사업지는 매도청구권 및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있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는 준공 후 입주자의 원활한 입주 업무 지원, 신속한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일부를 일정기간(입주업무는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최대 5개월, 하자 보수 업무는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최대 27개월)동안 입주지원센터(가칭) 및 현장A/S센터(가칭)로 사용하며, "계약자"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시설 사용에 대한 일체비용(임대료 등) 및 시설 이전·축소 등을 요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합니다.

■ 설계·시공 등

- 공급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형별 면적(㎡) X 0.3025)
-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각 용도별 면적이 소수점 이하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금액을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본 단지의 명칭, 동 표시, 외부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 과정에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타입은 세대의 내부 기둥 및 창문의 유무, 위치 상이에 따라 구분되어 있으니 이점 명확히 인지 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현장여건 및 주변환경,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전자파, 전자기장애, 분진발생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옥상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내 조경,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의 계획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의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단지 내 시설물의 변경, 향, 층에 따라 일조권, 도로소음발생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홍보용 이미지 및 모형 등에 표시되는 주변단지 및 건물, 시설물, 공원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정사항을 임의 제작한 것으로서 임대차계약서 작성 현재의 상황과 다르거나 향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이점 명확히 인지 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재 및 제품들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본 공사 시 동질 또는 동급 수준의 제품(타사 제품 포함)으로 시공됩니다.
-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걸레받이, 벽지,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석재 등 천연소재 자재의 경우 천연재료의 특성상 견본주택과 일부 상이한 색상과 무늬가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각 면적별 단위세대의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사이버모델하우스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테리어 가구 시공에 의하여 일부 면적이 가구 벽체 등으로 채워지는 부분이 있으니 이점 명확히 인지 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타일의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주방, 아트월, 욕실, 발코니, 현관 등)
- 발코니의 수전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되는 발코니에 인접한 세대는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배관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임차인모집 시 홍보물 및 실내투시도에 표시된 가전제품 및 인테리어소품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모형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시 평면도, 배치도, 현장여건 및 주변환경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주민휴게시설, 주민운동시설 등으로 시설물 및 수량, 마감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상품의 기타공용, 계약면적은 단지공용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의 계획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조경(수종, 식재개수 등) 세부 식재계획 및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되어 시공 될 수 있으며, 이점 명확히 인지 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관리 안전상의 이유로 옥상출입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공용부 공간을 임의로 전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세대현관문 앞 EV홀 전실 등은 사유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조경수 식재는 시공 시 단지조화 등을 고려하여 설치나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요청 또는 설계변경에 따라 조경선형, 포장, 조경시설물의 색채, 형태, 재료,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임차인모집 시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계획변경승인 또는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합니다.
- 건물의 건축물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 지분 및 평형별 공급면적 등이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 대지측량 결과에 따른 대지 경계선 조정, 관련법규의 변경, 건축허가 변경 및 신고 등에 따라 단지 조경 선형 및 세부 식재 계획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주변현황·단지배치

- 하기 사항에 따라 일조·조망·사생활 침해, 소음·빛공해·분진·냄새·진동 발생 등 환경권을 침해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바랍니다.
 -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 등의 설치로 인한 일부 일조, 조망 침해
 - 가로등, 야간 조명,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과 인접세대 소음, 빛공해, 사생활권 침해 등
 - 단지 주변 도로, 통행로 인접 등으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빛공해, 일조·조망·사생활권 침해 등
 - 단지 배치 상 쓰레기 분리수거함, 재활용 창고, 급배기시설(환기구 등),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에어컨 실외기 및 주방배기구 인접으로 인한 소음, 냄새 및 해충 등 환경권 침해
 - 주변 건축물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옹벽·석축, 단지 내 휴게공간·필로티·어린이놀이터·드라이에어리어(D/A)·천창(Top Light), 자전거보관소, 기타 부대시설 등의 설치로 일조·조망·사생활권 침해, 소음 발생 등 환경권 침해
 - 단지 배치계획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 위치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따라 소음 발생, 일조·조망·사생활권 침해 등 환경권 침해
- 당해 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며 조성사업 과정에서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평가(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에너지 사용계획 등의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변경 등으로 인해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 기반시설이 변경될 수 있으며,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남동측 약 0.1km 지점(직선거리) 초등학교 부지 및 고등학교 부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 본 단지 남서측 약 0.1km 지점(직선거리) 유치원 부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 본 단지 남서측 약 0.2km 지점(직선거리) 근린상업용지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단지 남서측으로 화성동탄물류단지(직선거리 약 0.7km)가 위치하여, 시설물 이용 차량에 따른 소음, 교통혼잡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서측의 동탄JC 남동측에 폐기물처리시설(크린에너지센터_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직선거리 약 3.3km)을 설치·운영 중에 있으니, 청약 및 계약체결 전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북서측 약 4.5km 직선거리에 동탄역(SRT, GTX-A(예정))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당해 지구는 인근 군부대 항공기에 의한 소음 발생지역입니다.
- 당해 지구 내에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등), 공급처리시설(변전소, 케이블 헤드 등), 가스공급시설 등의 공공시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 당해 지구 내에는 기존 공장(연구소, 물류시설 등) 및 기타시설(주유소 등)이 존치 예정입니다.
- 당해 지구 내에는 교량, 지하차도, 보도육교 등 도시시설물의 설치계획 및 주유소, 종교시설 등의 위치는 향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으로 기타 유해시설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체결 전 현장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망 및 도시계획에 의한 기반시설 설치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각종 광고 및 홍보물(건본주택, 카탈로그, 리플렛, 전단, 공급안내,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에 표시된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및 각종 시설(도로, 공공청사, 학교, 지하철,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공공용지 등)의 조성계획(예정사항)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예정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임차인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 및 영상물 등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건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에 접해있거나 단지주변에 있는 시설(철도, 도로, 공원, 보행로, 신호등, 횡단보도 등)은 시공범위가 아니며, 해당 시설 및 지형은 상위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변경된 계획레벨(도로, 보행자전용도로, 판매시설 등)에 따라 실 시공시 단지레벨 및 길이, 형태, 종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시공범위 외 기반시설의 세부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함)

- 지구단위계획 등 상위계획에 의해 설치되는 공지 및 공공보행통로등은 외부인이 이용 및 통행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합니다.
- 어린이놀이터의 놀이시설물 및 파고라 등의 크기, 형태는 추후 실시설계 진행에 따라 변형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진입을 위한 램프의 마감재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에서 발생하는 초등학교는 화성신동초등학교에, 중학생은 동탄2-2 중학교에 배치할 예정이며, 고등학생은 화성시 및 경기도내 고등학교 등에 지원가능합니다.
- 본 사업지에 학생배치에 관한 내용은 관련 정책 및 교육환경의 변화(관내 공동주택 개발, 학생 수, 학교 상황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지 인근 및 동탄2택지개발지구의 학교 설립 주체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입니다. 학교의 설립은 동탄2택지개발지구 개발(실시) 계획의 변경, 경기도화성동탄교육지원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보류(취소)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학교설립계획 및 학생 수용 계획은 공동주택 입주 시기 및 학생 수, 인근학교 배치여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아파트 주변 학교시설은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학교설립계획에 의하며, 학교설립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지구 내 학교부지가 취소 및 위치, 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상황에 따라 일부 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사다리차량을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합니다.
- 본 아파트의 난방은 지역난방으로 공급됩니다.
- 당해 지구는 지역난방지구로서 지역난방 사업자가 공급하는 중온수를 열교환을 통해 온수를 생산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므로 입주민의 개별적 취향에 맞는 고온의 바닥난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관 인·허가에 따라 단지 내/외 도로(인도, 차도, 비상 차량 동선 등), 부대 복지시설(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 실외 어린이놀이터 등)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을 입주자는 이의 없이 동의하며, 입주자에게 변경사항에 대해 추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 위치 및 개소는 보행 동선, 보관 편리성 등에 따라 현장 실 시공 시 각 동별로 위치가 삭제 또는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주동·공용부

- 하기 사항에 따라 일조·조망·사생활 침해, 소음·빛·공해·분진·냄새·진동 발생 등 환경권을 침해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건물 외부장식물에 의한 조망 및 일조 침해, 빛반사로 인한 빛공해
 - 지하주차장 기계실/전기실/발전기실/제연휀룸/저수조/근린생활시설 및 부대시설의 탈취기, 송풍기, 실외기 등에 인접한 세대의 소음, 냄새, 진동 발생 및 돌출물/시설물(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태양집광판, 피뢰침 등) 등으로 인한 일조, 빛공해, 조망간섭 등의 환경권 침해
 - 4124동, 4125동 지하층 주변에는 전기실/발전기실/저수조/펌프실 등이 설치되어 냄새 및 미세한 진동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 침해
 - E/V 운행에 따른 소음, 진동 등 발생으로 인한 환경권 침해
 - 주차장 램프 진출입로에 설치되는 출차경광등의 경보음(최소 50dB) 발생
- 단지 출입구의 문주는 형태 및 디자인, 배치, 규모, 마감재료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세대의 경우 석재 마감으로 인해 외부창호가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위치를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으며,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
- 공동주택 주차장은 각 동별 주차공간의 분포 및 위치에 따라 이용 시 거리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연결통로의 길이와 형태는 동별로 상이합니다. 또한, 경차, 장애인전용, 확장형주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충전시설· 전용주차구역, 일반 주차대수 등의 분포는 일부 동에 편중될 수 있습니다. 이에 배치 및 사용 편의성을 충분히 확인 후 계약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총 주차대수는 933대 (장애인주차 38대 포함, 근린생활시설 주차대수 불포함)
- 단지 커뮤니티 설계 및 제공되는 시설류 일부는 지역 개방형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합니다.
- 옥탑, 옥상 및 지하주차장 신축준은 공사계획에 따라 미시공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시 해당부위 백업재 및 코킹은 시공하지 않습니다.
- 일부 아파트 지붕 및 지상 일부구간에 태양광 집광판, 경관조명, 공청TV안테나,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 등이 설치될 수 있고 상세계획(설치면적,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 최종 확정되며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현장 옥상 상부에는 태양광 패널이 다수 계획되며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수량등)은 시공 단계에서 효율 개선 등의 사유로 변경될수 있습니다. 시야 간섭으로 인한 조망권 침해, 소음, 냄새, 그늘음, 진동 등의 환경권침해 및 빛반사로 인한 빛공해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공시 연돌효과 저감을 위한 방안으로 공용부 창호의 실시 위치, 개소,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외 공용부에 설치되는 전기, 통신관련 시설물은 사업승인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며, 통신단자함/전기분전반은 사용성 개선을 위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트렌치시공 시 시공부위의 주차구획은 트렌치폭을 포함하며, 트렌치가 측면, 배면에 시공될 시에는 주차라인마킹은 하지 않습니다.
- 엘리베이터홀, 부대시설의 경량천장틀 시공부위에 천장틀의 처짐 등 기능상, 안전상 지장이 초래 되지 않을 경우 마이너찬넬보강은 제외합니다.
- 지하주차장은 인.허가 도서에 준해 설치되며, 해당 천장고 초과 차량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구분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지하 1층	2.8m(단, 주차공간은 2.1m 이상)	2.7m
지하 2층	2.8m(단, 주차공간은 2.1m 이상)	2.7m

- EPS, TPS, AD/PD, PIT, ST, AV 등의 내부벽체(ALC(경량콘크리트블록), 조적벽체, 콘크리트벽체)는 초벌미장 시공을 제외하며, 해당구간의 조적벽체 미장은 E/V 홀 또는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만 시공합니다.
- 시멘트 몰탈 마무리두께는 15mm 내외로 하며 바탕면에 따라 오차범위 5mm를 포함합니다.
- 창호는 공사여건에 따라 ±50mm범위 내에서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을 위한 배기덕트 및 환기시설이 세대 인근에 설치될 수 있으며, 소음, 냄새, 진동 발생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창이 개폐여부 및 방식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홀, 지하층 통행로 등 공용부의 벽체타일 및 세대 아트월은 에폭시 떠붙임 공법으로 시공시 4~5지점(600*600기준) 지지로 시공하며, 뒷채움 정도는 에폭시 자재의 제조사 스펙에 따릅니다.
- 무늬코트 도장 마감인 경우, 도면 지정된 부위에 수성 페인트 도장 후 무늬코트도료를 1회 스프레이 도장합니다. (상도코팅은 수성으로 시공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무광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최상층 및 지하주차장, 지상 일부구간에 이동통신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높이가 60m 초과시에는 지면에서 건축물의 높이 5분의4가 되는 지점에 돌침형피리침이 설치되어 건물외벽(특정세대 발코니앞) 미관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엘리베이터에 면하거나 인접한 실은 엘리베이터 운행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홀의 형태는 동별, 호수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합니다.
- 기계/전기설 등은 실 시공 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기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등의 급배기용 DA가 지상에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미관저해 및 소음,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종 기계설비 덕트배관 및 전기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 및 피트층을 공동 사용하며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 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이점 명확히 인지 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통신설비(옥외안테나) 설치 예정 위치 : 4122동 옥상층, 4123동 옥상층, 4124동 옥상층, 4128동 옥상층
 - 이동통신설비(중계장치) 설치 예정 위치 : 4122동 옥상층, 4123동 옥상층, 4124동 옥상층, 4128동 옥상층, 4123동 지하2층 PIT, 4123동 지하1층 PIT, 4126동 지하1층 PIT
- 전기차 등의 충전시설 설치 법적 의무대상으로 지하주차장 내 충전시설 및 주차구획은 법적개소 이상 계획 하였으며, 추후 설치위치 및 개소수는 법적개소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동별 이용 가능한 대수 및 접근의 형평성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의 배관, 케이블 및 기타설비 등이 주차장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함의 설치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주동 세대별 접근 거리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태양광 집광판의 설치 위치에 따라 옥상에 설치되는 시설물(옥상장식물 등)의 위치,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현관 앞 공용부분은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를 변경할 수 없으며, 불법행위(전실 설치 등) 시 관련 법령에 의거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은 입주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경관 조명에 의한 빛 공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외보안등 및 지하, 지상층 CCTV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기능과 감시 범위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대지 인접도로 등에 인접한 저층 세대에는 옥외보안등, 기타 보안시설 등에 의한 빛 공해 및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당해 건물 측면 및 옥상에 항공장애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빛 공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용부 등에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되며,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발생합니다.
-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 기반시설인 한전 공급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한전패드 위치 등 부지제공 계약의 승계업무가 입주자에게 있으며, 설치 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한국전력공사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CCTV와 주차장 카메라의 설치 및 촬영은 입주자의 방법과 편의성을 위해 설치되므로 동의 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물의 발전기실에는 비상발전기가 설치 될 예정이며, 점검 등으로 인한 기기 작동 시 소음 및 진동 등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차량출입구 통행 개선을 위하여 차단기가 추가설치, 삭제, 위치이동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도로폭 확대 및 보행로폭 축소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가스배관 등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 옥상에는 태양광 발전설비 등이 설치 될 예정이며, 기기 작동 시 하부 세대에 소음, 냄새, 그늘음, 진동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시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옥상에 설치되는 시설물(옥상장식물, 구조공간, 태양광집광판, 설비시설물 등)의 위치,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탑승위치 등)은 견본주택에 비치된 사업승인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 시공은 사용승인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
- 단지명, 단지내 시설명칭, 동·호수의 표기 등은 지자체 승인 관련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 동별, 세대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는 세대가 일부 존재하며 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합니다.
- 발코니에는 상부 배수배관이 천정내 설치될 수 있으며, 배수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해 공동주택은 침실1 전면부 및 다용도실을 제외한 전체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발코니 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하여 요청할 수 없습니다. 이점 충분히 인지 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소품 등은 세대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제외 품목입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본 공사 및 하자보수 시 동등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 스피커의 개수 및 위치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 시공 시 각 단위세대 타입별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그 설치 위치가 결정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환기구의 크기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실내 환기성능을 고려하여 위치 및 개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재의 사양은 주택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차이점을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시 타일, 엔지니어드스톤 및 천연가공석(거실 벽, 주방 벽/상판, 욕실 벽/바닥, 현관/발코니 바닥 등)의 나누기 및 줄눈 두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일 및 천연가공석의 줄눈나누기, 마감 등을 고려하여 월패드, 세대분전함, 세대단자함, 배선기구, 보일러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타일류, 엔지니어드스톤, 천연가공석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단차, 코너, 마감재접합부, 패턴 등은 본 공사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수전류, 욕실 마감자재(양변기, 세면기, 휴지걸이, 수건걸이, 코너선반, 수건선반 등), 욕실FAN 등의 위치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벽체 마감재 종류 및 두께에 따라 내부공간 면적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사이즈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가전 기기 등 설치 공간의 크기는 견본주택과 같으며 그 보다 큰 가전 기기는 해당 공간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 신발장 또는 창고, 기타 세대 내부에 세대분전함, 세대단자함, 세대통신분전함 등이 개별 또는 통합 설치되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 기타 마감재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 품목(가구, 가전, 등기구, 스위치 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등기구 보강은 “원형 매입등 $\phi 800$, 사각 매입등 $800*800$ ” 규격 이상에만 해당됩니다.
-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의 폭(벽체 두께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싱크장 하부에는 온수분배기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장 하부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납이 제한됩니다.
- 현관, 신발장, 실외기실, 비화장발코니, 다용도실, 주방가구 하부, 샤워부스, 욕조하부, 양변기 주변 세면대 하부 등 이와 유사한 장소에는 난방 코일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유상옵션품목(가구, 가전 등)은 반드시 사전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 난간은 확장형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 발코니, 욕실, 현관 등은 바닥 단차설계가 적용되며, 출입문 개폐 시 신발 걸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 축벽, 세대간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축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벽체 돌출 및 실사용 면적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 사양이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내습도 및 사용자의 생활 환경이나 습관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창 표면 등 창호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합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발코니)은 본 공사시 마감재 설치 등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수전이 설치되는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이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바닥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됩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 중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시 코킹 시공 부위 및 색상은 달라질 수 있으며, 욕실 천정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 반침장, 신발장, 욕실장, 거울 등 설치되는 가구의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에는 마루, 타일, 엔지니어드스톤, 천연가공석,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으며, 주방가구의 경우 후면/천장에는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 거울의 경우 보호페인트가 입혀졌더라도, 자재특성(은 성분)상 산성, 알카리성 세제와 쉽게 화학반응하며, 습기에 의해 변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바 욕실 환기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입주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합니다.
- 침실, 거실, 주방의 조명스위치는 이동, 취침준비 등을 고려하여 마지막 소등되는 회로가 몇 초간 지연 후 소등되는 조명스위치가 설치됩니다.
- 세대 내 유리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위치별로 특성이 다른 유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각종 도어 및 창호류의 사양(유리사양, 창틀 디자인, 손잡이, 창호크기, 루버형태, 재질, 색상, 제조사, 열림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이오티(Hi-oT) 서비스의 경우 이동통신사/포털사/제휴사의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 업체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 및 사용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하이오티(Hi-oT) 가전기기 제어서비스는 하이오티 연동된 IoT가전기기를 구매하고 세대 내 무선인터넷 환경이 구축된 경우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기 제조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제한 및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서비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하이오티(Hi-oT) 서비스는 성능 개선이나 입주 시의 기술개발 환경 등의 사유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 플랫폼 운영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현장여건,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 등의 사유로 조명기구, 월패드, 분전함, 콘센트, 소방설비 및 배선기구류 등이 동등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세대의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는 디자인, 사양, 갯수, 설치위치 등이 건립세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갤러리(루버) 창 프레임 및 갤러리의 색상은 외부 색채 디자인에 따라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전열교환 환기장비 및 덕트가 실외기실/발코니 등 천정에 노출 설치되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작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환기장비에는 외부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HEPA필터가 설치되며, 필터는 연 1~2회 교체하는 것을 권장하며, 사용정도에 따라 교체주기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필터구입 및 교체는 입주자(임차인)분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냉난방겸용 에어컨은 방문객을 위한 시설이며, 본 시공시 냉방전용 시스템에어컨이 유상옵션으로 제공됩니다.
- 화장실 천장에 급수를 위한 분배기 및 상부층 배수배관이 설치 됨에 따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가 천장에 설치됩니다.
- 스마트폰 인증으로 공동현관 자동문 출입이 가능한 스마트폰 키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 보조 출입키(카드형 RF키)는 세대 당 2개가 지급 됩니다.
- 스마트폰 키 및 스마트폰 자동 주차위치 저장 시스템은 스마트폰의 Bluetooth 기능이 활성화 되어 있어야 하며, 일부 스마트폰 기기에서는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자동 주차위치 저장 시스템은 세대별 등록된 차량을 지하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 주방가구 내부에 콘센트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됩니다.
- 스마트 주방거치대가 설치될 경우, 전원 및 통신단자용 통합콘센트가 스마트 주방거치대 후면 높이에 설치 및 후면에 전원선 및 통신케이블이 노출됩니다.
- 스마트 주방거치대가 설치될 경우, 주방 가구 유상옵션에 따라 설치될 수 있는 가구장 매립 조명과 간섭될 수 있으며, 이를 피하기 위하여 설치형태가 변경 될 수 있으니 계약전 명확히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에 설치되는 배선기구(콘센트 및 스위치 등)는 본 공사시 가스배관, 가구장, 악세서리 등 평형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 수량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평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기 바랍니다.
- 전원 및 통신단자용 통합콘센트가 주방 타일면에 노출되어 설치 될 경우, 전원선 및 통신케이블이 노출됩니다.
- 세대 내 마감상황(타일 및 천연가공석의 줄눈나누기, 도배와 가구 설치내용 등)과 제품의 품질수준 유지를 고려하여 월패드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장소별 색온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세대단자함 내부에는 별도의 허브장치가 지원되지 않으며, 해당 장치는 인터넷 설치 시 각 기간사업자에게 제공 요청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 각 타입에 연출되어 있는 스포트라이트, 스탠드 조명 및 펜던트는 전시용으로 실 시공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홈네트워크 설비 및 대기전력 차단 시스템유지 등에 따라 미 입주시에도 일부 전기사용량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세대분전반 차단시 홈네트워크설비, 방법 및 경보 알람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 옵션 선택 유/무 및 사용성 개선에 따라 온도조절기 및 조명스위치는 통합형 또는 분리형으로 적용 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에 가스배관, 렌지후드 환기덕트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일부 가구의 깊이가 줄어들 수 있으며,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 위쪽으로 가스 배관 등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벽체 등 시멘트 몰탈 떠붙임 공법의 뒹채움은 70%~80%로 시공합니다.
- 대피공간 없이 발코니(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관계법령에 따라 화재 등 긴급 피난시 상부세대에서 하부세대로 하향식 피난구가 개방되고, 사다리가 내려와서 아래 세대로 피난이 되는 구조)가 설치되는 경우, 피난구의 설치 위치는 층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최하층 세대, 필로티 및 PIT 상부 세대는 하향식 피난사다리 설치가 제외됩니다.
-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는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가 필요하며, 하향식 피난구 설치세대는 비상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을 위하여 항시 실외기 출입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 및 방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인·허가상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갑"이 책임지지 않으며, 또한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소음 및 누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제품개발에 따라 기능이나 디자인, 색상, 설치위치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동등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 보안용으로 본 공사시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단위 세대 내 세대분전함, 세대단자함, 세대통합분전함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월패드 및 배선기구류의 제품사양, 설치방향, 개소, 디자인 및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 주방거치대가 설치될 경우 전원은 해당기기 후면에 설치된 콘센트를 사용합니다.
-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 품목(가구, 가전, 조명기구, 배선기구 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세대의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는 디자인, 사양, 갯수, 설치위치 등이 건립세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에 설치되는 전열기구(콘센트, 스위치 등)위치 및 수량은 본 공사시 주방 가구, 쿡탑, 개수대, 악세서리 등 설치 위치에 따라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마감 상황(타일 및 천연가공석의 줄눈너누기, 도배와 가구 설치내용 등)과 제품의 품질수준 유지를 고려하여 월패드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통합분전반은 침실2 방문 뒤쪽에 설치될 예정이며 실시공 시 위치 및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천정 내부, 다용도실, 실외기실 벽체 및 주방가구 옆면, 뒷면 등에 PD 내부를 점검하기 위한 내시경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점검구 마감을 위한 덮개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램프 진출입로에 설치되는 출차경광등은 최소 50dB이상의 경보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본 아파트 각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부대복리시설 시설물은 동선/성능 개선 및 인허가 의견 등의 사유로 실 시공시 위치 변경,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동선 변경,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변경, 실내구획 변경, 명칭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관계법령(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계획되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건축계획변경에 따라 형태, 색상, 외관, 마감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니 이점 명확히 인지 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용 CG 등에 표현된 부대복리시설의 실 내부구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서 추후 임차인의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관련 법규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크기, 위치, 사양, 단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실 명칭은 추후 실용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환경권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되는 실외기실에 의해 주변에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 내 바닥레벨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 내·외부 디자인과 창호사양 및 규격은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평면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내부구획 및 마감재 등은 현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자는 단지 내 커뮤니티의 공간만 제공하고 내부 집기, 비품 및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함.
- 각 주동에 인접하여 기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등의 급배기용 DA가 지상에 노출 설치될 예정이며, 인접세대의 미관저해 및 소음, 악취 등이 발생될 수 있으니 이점 명확히 인지 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놀이터, 옥외 운동시설 인근 세대 및 상부 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들은 견본주택에 비치된 도면을 통해서 계약 전 위치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 설치로 인하여 인근 세대의 미관저해,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에 설치될 실외기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인근세대의 소음 등 환경권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이점 명확히 인지 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DA설치로 인하여 인근 세대의 미관저해 및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 및 부대복리시설의 천장고는 시공성 및 설비, 전기 배관 등의 간섭 등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내.외부 디자인과 창호사향 및 규격은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평면 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생시설, 부대복리시설의 지붕과 같은 층에 거실이 존재하는 세대는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자가 지붕에 올라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점 명확히 인지 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물 (카탈로그, 팸플릿) 관련 유의사항

- 본 광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합니다.
- 본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물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향후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물(카탈로그, 리플렛, 전단, 공급안내, 홈페이지 등)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 모형,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홍보물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그림)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단위세대 창호 크기 및 위치, 발코니 확장 및 연출품목 전시용가구 가전제품 등을 임의로 배치하여 시물레이션한 것이므로 계약 전 견본주택에 비치된 도서의 확인, 현장방문의 수단을 통하여 그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제작물은 광고·홍보물이므로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임대차계약서를 살펴보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임차인모집공고 이전에 제작 및 배포된 홍보물(리플렛, 전단지, CG이미지켓, 현수막 등)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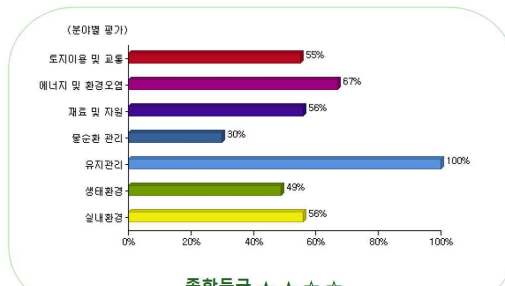


■ 친환경 주택 성능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적용]

	구분	적용여부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미적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조명설치(다목)	적용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 주택성능등급

- 당 사업장은 녹색건축예비인증 우량(그린3)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1+등급, 초고속정보통신 예비인증 특등급, 홈네트워크 AA등급 건물입니다.
- 녹색건축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는 예비 인증으로서 공사 중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법」제39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제8조, 「녹색건축 인증 기준」제3조에 따라 인증된 공동주택의 항목별 성능등급을 아래와 같이 표시합니다.

녹색건축 예비인증서(우량(그린3)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1+등급)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예비인증서																																																										
<p style="text-align: center;">녹색건축 예비인증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 style="width: 50%;">건축물 개요</th> <th style="width: 50%;">인증 개요</th> </tr> <tr> <td> 건축물명 : 화성동탄 A61블록 공동주택 건축주 : (주)화성동탄에프에프이 준공(예정)일 : 2024.02.29.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신동 동탄2지구 A-61블록 층수 : 지하2층, 지상20층 연면적 : 106,530.8576㎡ (항공연면적: 104,523.8975㎡) 건축물종도 : 공동주택 설계자 : (주)나산종합건축사사무소 </td> <td> 인증번호 : G-SEED-P-2022-0948-5 인증기관 : 한국부동산원 유효기간 : 2022.06.23. - 사용승인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산날 인증등급 : 우량(그린3등급) 인증기준 : 녹색건축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9-764호, 환경부고시 제 2019-248호, 인증기준 운영세칙(2020.04.30.)) </td> </tr> </table> <p>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우량(그린3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div style="text-align: center;">  <p>2022년 08월 23일</p> <p style="font-size: 1.2em; font-weight: bold;">한국부동산원장</p> </div> <p><small>* 예비인증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small></p>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화성동탄 A61블록 공동주택 건축주 : (주)화성동탄에프에프이 준공(예정)일 : 2024.02.29.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신동 동탄2지구 A-61블록 층수 : 지하2층, 지상20층 연면적 : 106,530.8576㎡ (항공연면적: 104,523.8975㎡) 건축물종도 : 공동주택 설계자 : (주)나산종합건축사사무소	인증번호 : G-SEED-P-2022-0948-5 인증기관 : 한국부동산원 유효기간 : 2022.06.23. - 사용승인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산날 인증등급 : 우량(그린3등급) 인증기준 : 녹색건축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9-764호, 환경부고시 제 2019-248호, 인증기준 운영세칙(2020.04.30.))	<p style="text-align: center;">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p> <p style="text-align: center;">■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 6호 서식) 개정 2017.1.20</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 style="width: 50%;">건축물 개요</th> <th style="width: 50%;">인증 개요</th> </tr> <tr> <td> 건축물명 : 화성 동탄 A61블록 공동주택 준공연도 : 20231031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신동 동탄2지구 A-61블록 층수 : 지하2층 / 지상20층 연면적 : 106530.8576㎡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주)나산종합건축사사무소 </td> <td> 인증번호 : 21-06-01-0211 평가자 : 공평회 인증기관 : 한국건설에너지기술원 유효기간 : 2024년 03월 31일 유효유형 : 사용승인 또는 사용승인 안됨 </td> </tr> </table>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에너지 효율등급 73.3</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CO2 배출량 30.7</p> </div> </div>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caption>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caption> <thead> <tr> <th>구분</th> <th>에너지효율등급 (에너지소비량 kWh/㎡·년)</th> <th>등급</th> <th>CO2 배출량 (kg/㎡·년)</th> <th>비율</th> </tr> </thead> <tbody> <tr> <td>냉방</td> <td>0.0</td> <td>A++</td> <td>0.0</td> <td>0.0</td> </tr> <tr> <td>난방</td> <td>35.1</td> <td>A+</td> <td>41.8</td> <td>5.0</td> </tr> <tr> <td>냉방</td> <td>39.7</td> <td>A</td> <td>31.0</td> <td>6.9</td> </tr> <tr> <td>조명</td> <td>7.5</td> <td>B</td> <td>19.0</td> <td>3.2</td> </tr> <tr> <td>환기</td> <td>3.4</td> <td>C</td> <td>9.3</td> <td>1.6</td> </tr> <tr> <td>합계</td> <td>73.3</td> <td>1</td> <td>101.1</td> <td>20.7</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에너지효율등급 1+등급</p> <p style="text-align: center;">2021년 04월 29일</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건설에너지기술원장</p>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화성 동탄 A61블록 공동주택 준공연도 : 20231031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신동 동탄2지구 A-61블록 층수 : 지하2층 / 지상20층 연면적 : 106530.8576㎡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주)나산종합건축사사무소	인증번호 : 21-06-01-0211 평가자 : 공평회 인증기관 : 한국건설에너지기술원 유효기간 : 2024년 03월 31일 유효유형 : 사용승인 또는 사용승인 안됨	구분	에너지효율등급 (에너지소비량 kWh/㎡·년)	등급	CO2 배출량 (kg/㎡·년)	비율	냉방	0.0	A++	0.0	0.0	난방	35.1	A+	41.8	5.0	냉방	39.7	A	31.0	6.9	조명	7.5	B	19.0	3.2	환기	3.4	C	9.3	1.6	합계	73.3	1	101.1	20.7	<p style="text-align: center;">초고속정보통신 건물 예비인증서</p> <p style="text-align: right;">인증번호 세 2023-101-015 호</p> <p style="text-align: center;">이 건물은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에 의해 다음과 같은 등급으로 평가되었음을 인증합니다.</p> <p>※ 이 인증서는 2020년 01월 인증기준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 이 인증서를 각종 광고 및 건물건물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비인증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rowspan="2">신청인</td> <td>이름</td> <td>(주)화성동탄에프에프이</td> </tr> <tr> <td>주소</td> <td>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76-22, 301호</td> </tr> <tr> <td rowspan="2">건축물</td> <td>이름</td> <td>화성동탄A61BL 공동주택 건축공사</td> </tr> <tr> <td>주소</td> <td>경기도 화성시 신동 561-1</td> </tr> <tr> <td rowspan="2">인증내용</td> <td>구분</td> <td>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파트 <input type="checkbox"/> 업무시설 <input type="checkbox"/> 오피스텔 <input type="checkbox"/>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기숙사 · 도시형생활주택 </td> </tr> <tr> <td>인증등급</td> <td> 초고속정보통신건물 <input checked="" type="checkbox"/> 특등급 <input type="checkbox"/> 1등급 <input type="checkbox"/> 2등급 홈네트워크건물 <input type="checkbox"/> AAA(홈IoT) <input checked="" type="checkbox"/> AA <input type="checkbox"/> A </td> </tr> </table> <p style="text-align: right;">2023년 06월 19일</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전파관리소장</p>	신청인	이름	(주)화성동탄에프에프이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76-22, 301호	건축물	이름	화성동탄A61BL 공동주택 건축공사	주소	경기도 화성시 신동 561-1	인증내용	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파트 <input type="checkbox"/> 업무시설 <input type="checkbox"/> 오피스텔 <input type="checkbox"/>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기숙사 · 도시형생활주택	인증등급	초고속정보통신건물 <input checked="" type="checkbox"/> 특등급 <input type="checkbox"/> 1등급 <input type="checkbox"/> 2등급 홈네트워크건물 <input type="checkbox"/> AAA(홈IoT) <input checked="" type="checkbox"/> AA <input type="checkbox"/> A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화성동탄 A61블록 공동주택 건축주 : (주)화성동탄에프에프이 준공(예정)일 : 2024.02.29.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신동 동탄2지구 A-61블록 층수 : 지하2층, 지상20층 연면적 : 106,530.8576㎡ (항공연면적: 104,523.8975㎡) 건축물종도 : 공동주택 설계자 : (주)나산종합건축사사무소	인증번호 : G-SEED-P-2022-0948-5 인증기관 : 한국부동산원 유효기간 : 2022.06.23. - 사용승인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산날 인증등급 : 우량(그린3등급) 인증기준 : 녹색건축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9-764호, 환경부고시 제 2019-248호, 인증기준 운영세칙(2020.04.30.))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화성 동탄 A61블록 공동주택 준공연도 : 20231031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신동 동탄2지구 A-61블록 층수 : 지하2층 / 지상20층 연면적 : 106530.8576㎡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주)나산종합건축사사무소	인증번호 : 21-06-01-0211 평가자 : 공평회 인증기관 : 한국건설에너지기술원 유효기간 : 2024년 03월 31일 유효유형 : 사용승인 또는 사용승인 안됨																																																											
구분	에너지효율등급 (에너지소비량 kWh/㎡·년)	등급	CO2 배출량 (kg/㎡·년)	비율																																																								
냉방	0.0	A++	0.0	0.0																																																								
난방	35.1	A+	41.8	5.0																																																								
냉방	39.7	A	31.0	6.9																																																								
조명	7.5	B	19.0	3.2																																																								
환기	3.4	C	9.3	1.6																																																								
합계	73.3	1	101.1	20.7																																																								
신청인	이름	(주)화성동탄에프에프이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76-22, 301호																																																										
건축물	이름	화성동탄A61BL 공동주택 건축공사																																																										
	주소	경기도 화성시 신동 561-1																																																										
인증내용	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파트 <input type="checkbox"/> 업무시설 <input type="checkbox"/> 오피스텔 <input type="checkbox"/>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기숙사 · 도시형생활주택																																																										
	인증등급	초고속정보통신건물 <input checked="" type="checkbox"/> 특등급 <input type="checkbox"/> 1등급 <input type="checkbox"/> 2등급 홈네트워크건물 <input type="checkbox"/> AAA(홈IoT) <input checked="" type="checkbox"/> AA <input type="checkbox"/> A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통신감리
회사명	(주)도원엔지니어링	(주)서전종합전기	(주)재원엔지니어링	(주)재원엔지니어링
감리금액	1,581,745,000원	428,172,179원	423,500,000원	203,500,000원

■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의 유의사항

- (주)무궁화신탁은 계약의 중도해지에 의한 환불금 및 부족한 사업비의 조달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 본 임대주택의 신축 및 임대사업은 사업주체 주식회사 화성동탄피에프브이가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에게 자금관리 업무를 위임하여 진행하는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으로, 실질적인 임대사업자는 본 사업의 사업주체 겸 대리사무계약의 위임자인 주식회사 화성동탄피에프브이임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주)무궁화신탁은 본 사업의 자금관리(임대보증금 등 수납 및 자금집행)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대금 반환의무는 사업주체가 부담함을 확인하며, 향후 대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여 본 사업의 자금관리계좌 잔액이 임대대금 반환액보다 작을 경우, 그의 부족분에 대한 자금조달(총당) 의무는 사업주체의 책임으로 이행합니다.
-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의 수임자인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은 임대인이 아니므로 임대보증금 반환의무를 포함한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임차인은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청구하거나 임대인으로서의 의무이행을 요구할 수 없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임대보증금 반환의무 등을 포함한 임대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본 사업의 사업주체 겸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의 위임자인 주식회사 화성동탄피에프브이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사업주체			시공회사
대표시행사	공동 시행사		
(주)화성동탄피에프브이 (110111-7832606)	(주)에이치엠지힐스 (124411-0180232)	(주)한강주택관리 (131411-0363780)	현대건설(주)

■ 사이버 모델하우스 : <https://hillstate.co.kr/SALE/999/main/index>

■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967-1810

■ 임대 및 계약관련 문의 : ☎ 031-377-5856

※ 본 임차인 모집안내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